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창원지방검찰청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박태호
전화 055-239-4365

보 도 자 료
2022. 9. 2.(금)

제목 사회봉사, 우리 지역 일손 돕고 벌금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
- 사회봉사제도는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긴 경우 사회봉사활동으로 벌금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,
 - 대상자의 구금을 최소화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효과가 클 뿐 아니라, 인력난으로 어려움이 많은 농어촌, 사회복지시설 분야 등에서 이루어져 지역경제에 기여하며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도 있음
- 특히 코로나19, 물가상승 등으로 더욱 힘든 경제상황에 빠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커지고 있어,
 - 창원지방검찰청은 사회봉사제도를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고자 2022. 8. 31.부터 벌금납부관련 문자메시지 발송, 안내장 교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으며, 사회봉사 신청시 일정한 요건 아래(비난가능성 적은 범죄, 실질적 납부능력 등) 보다 적극적으로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하겠음
- ▲ 벌금미납자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에 ‘실직, 폐업, 매출급감’ 등 구체적 실례를 기재하여 사회봉사 신청요건을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
- ▲ 검찰청에 사회봉사 제도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고, 벌금 관련 방문자에게 신청요건 관련 안내장을 교부
- ▲ 문자메시지, 안내장, 유선 상담을 통하여 사회봉사 신청시 검사가 사회봉사 의지와 경제능력 등을 심사하여 법원에 허가청구

1

사회봉사 신청요건 · 구체적 방법 적극 안내

1. 검토배경

- 최근 대검에서 사회봉사 신청요건 중 소득수준 기준을 중위소득 대비 50% 이하에서 70% 이하로 넓혀 사회봉사 대상자를 확대
 - ※ '22. 8. 2. 대검 「빈곤·취약계층 벌금미납자 형 집행 제도개선」으로, 4인 가구의 경우, 월소득 2,560,540원 이하에서 3,584,756원 이하로 확대
- 그러나, 사회봉사제도는 재산,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, 실제로도 무자력인 경우만 사회봉사신청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, 지역사회에 신청요건과 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

2. 사회봉사의 신청 요건

- 사회봉사 신청요건은 원칙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나, 검찰에서는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도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청구를 하고 있음

- ① 신청인의 가족 중 질병이나 중상해 또는 장애로 장기치료 또는 고액의 치료비가 필요하여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② 화재 또는 수해 등 재난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
-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인 경우
- ④ 소득금액 대비 채무가 많아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⑤ 현재 실직하여 소득이 없고, 재산도 없는 경우
- 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